

의안번호	2207402
의 퇴 인	박정현의원
회 답 일	2025.1.10.
추 계 번호	25D0142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)제6항 및 제31조의6(전자장치 부착의 집행)	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교제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1. 교제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. 교제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. 교제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(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)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교제폭력행위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함	재량·의무 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(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)제6항 및 제31조의6(전자장치 부착의 집행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교제폭력범죄자 전자장치 부착(안 제5조)

- 개정안은 검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교제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교제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때
 - 교제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때
 - 교제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(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습벽이 인정된 때
- 최근 5년간 교제폭력범죄 건수는 다음과 같음

[표] 교제폭력 형사입건 건수: 2019~2023년

	2019	2020	2021	2022	2023
교제폭력 형사입건 건수	9,823	8,951	10,538	12,828	13,939

주: 실제 교제폭력건수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, 교제폭력 형사입건 건수를 참고
자료: 공공데이터 포털(data.go.kr)

- 현재 법무부 ‘전자감독’ 사업의 자산취득비로 전자감독장비를 구입하고 있고, 2025년 예산안 기준 전자감독 장치 구입 비용으로 총 41억 5,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, 전자장치 개당 가격은 180만원임
- 다만,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,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의무위반 등 위험징후 발생 시 가해자·피해자에 대한 현장조치를 위한 인력증원, 신고처리인력 증원,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신속 대응을 위한 112시스템 간 연계 등이 필요할 것이나 현 시점에서 이를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아름	02-6788-4664	krm7839@nabo.go.kr